

國際貿易秩序의 再編에 따른 對外貿易法の 改正方向

李相潤*

차 례

- I. 序
 - 1. 世界貿易秩序의 再編
 - 2. 對外貿易法の 改正
- II. 世界貿易秩序의 再編
 - 1. GATT의 基本原則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전개
 - 2. 貿易範圍의 擴大
 - 3. 保護貿易主義의 強化
 - 4. 世界經濟의 블록화
 - 5. 環境保護 및 野生動植物保護의 대두
- III. 對外貿易法の 改正方向
 - 1. 世界貿易秩序와 우리나라의 역할
 - 2. 貿易秩序制度和 貿易去來制度의 改善 및 體系化
 - 3. 貿易範圍의 整備
 - 4. 自由貿易協定締結의 검토
 - 5. 기타 改正方向
- IV. 結

* 法制處 行政事務官, 法學博士

I. 序

1. 世界貿易秩序의 再編

21세기를 목전에 둔 國際貿易秩序는 세계경제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인한 국제경제의 多極化현상, GATT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진행 및 각국간의 이해대립, EC통합추진과 북미자유무역지대의 형성등 地域主義의 강화, 지구 환경보호논의의 발전등 대폭의 구조적 개편과정을 겪고 있다.¹⁾

이러한 구조적 개편과정은 크게 두가지의 흐름으로 대별할 수 있다.²⁾ 하나는 GATT로 대표되는 自由貿易主義 및 多者間主義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GATT외의 保護貿易主義 및 兩者間主義의 흐름이다. 전자의 GATT는 1947년에 조직되어 관세, 비관세장벽의 완화등 자유무역의 확대를 다자간협상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협정이다. 현재 GATT 제8차 회의인 우루과이라운드는 1986년 9월 우루과이 세계통상장관회의에서 출범하여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등 새로운 분야의 교역확대, 자유무역 및 공정무역의 실현등을 도모하고자 수차에 걸쳐 분야별협상이 논의되었으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EC간의 異見등으로 인하여 1993년 5월 현재까지도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 후자는 GATT에서 축소, 철폐하고자 하는 각종 비관세장벽의 직·간접적인 강화를 통한 保護貿易主義의 심화 및 EC경제통합·북미자유무역지대의 형성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등으로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國際貿易의 장에서 서로 다른 두가지 조류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는 현 GATT체제내에서는 자유무역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일부 국가만이라도 자유무역 및 공정무역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명목상의 이유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선진국들이 과거 國際貿易體制하에서 유지하였

1) Hudee, *The GATT Legal System and World Trade Diplomacy*(2d ed., 1990).

2) 유득환, "한국무역, 무엇이 문제인가", *신국제경제질서*(신유균, 1993) pp.183-195 참조.

3) Smith, Comment, "The GATT and International Trade", 39 *Buff. L. Rev.* 919(1991).

던 주도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하는데에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미국은 세계경제에서 전후 수십년간 향유하였던 주도적 지위를 점차 상실함에 따라, 우선 GATT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규범의 설정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이 현 GATT우루과이라운드에서 미국이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무역관련투자, 서비스 및 지적소유권시장개방을 의제로 상징하게 되었다. 그러나 6년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GATT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지 아니하고, 일본의 경제력강화, EC경제통합의 발전등 世界貿易 경쟁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강화되자,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북미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과 동시에 교역상대국시장의 개방, 자국시장의 보호등을 개별 교역상대국과의 양자간협상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國際貿易상의 두가지 커다란 조류이외에도 국제환경의 보호, 국제기술패권주의 대두등이 문제시 되고 있어 國際貿易秩序는 한층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 對外貿易法の改正

현행 對外貿易法상의 각종 법규와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제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1960년대에 최초로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의 改正이 이루어져 왔으나, 國際貿易環境의 급격한 변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상승등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對外貿易法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조속한 改正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GATT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국제환경보호협약의 확산등 급격히 변화하는 國際貿易環境의 對外貿易法에의 반영이다. GATT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제도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무역제도를 GATT규정에 부합되도록 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각종 수입규제조치 및 각종 수출지원제도가 대폭 축소되어야 하며, 기존무역의 개념이 상품위주에서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 서비스, 환경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⁴⁾

4) Arthur Dunkel, Trade Policies For a Better Future : The GATT and the Uruguay Round(1987) 참조.

둘째는 우리나라가 世界貿易에서 제10대 교역국으로 성장됨에 따라 그 지위에 부합되는 역할, 즉 世界貿易에서의 책임과 의무의 수행 및 권리의 주장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國際貿易 문제는 GATT의 다자간 협상을 비롯하여 미국·EC·일본등을 비롯한 세계주요 교역국과의 양자간 협상,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한 亞·太地域國家와의 무역협력등이 주요 과제인 바, 이 과정에 있어 GATT규범을 비롯한 국제법, 국제조약 및 교역대상국의 국내법에 의한 의무 및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對外貿易法이 改正되어야 한다.

셋째, 對外貿易法의 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對外貿易法은 크게 불공정무역규제,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의 부과, 수입피해규제등의 “貿易秩序規定”과 수출입 절차등을 규정하는 “貿易去來規定”의 두부분으로 대분할 수 있다. 이 중 “貿易秩序規定”은 특히 對外貿易法 전반에 산만하게 혼재되어 있고 체계적인 법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貿易去來規定”은 복잡하고 규제적이므로 전자는 보완해야 하는 한편 후자는 간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本稿는 크게 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GATT를 중심으로 한 世界貿易環境의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서 현재 GATT체제의 自由貿易主義 및 多者間主義를 기본원리로 GATT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진행되고 있음과 동시에 이와 반대로 保護貿易主義, 兩者間主義 및 地域主義등이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였다.⁵⁾ 둘째 부분은 對外貿易法의 改正방안으로서 세계주요교역국중의 하나로서 부상한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世界貿易環境하에서 올바른 권리주장 및 의무이행을 행하는 한편 수출입의 균형적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5) 다자간주의와 양자간주의,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및 지역주의등을 논하는 분석방법은 거시구조적접근방법(macro-institutional arrangement)로서, 상호주의(reciprocity), 의제상호연결(issue-linkage) 및 담보교역(hostage trading)을 논하는 미시구조적접근방법(micro-institutional arrangement)와 구별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Beth V. Yarbrough & Robert M. Yarbrough, "Reciprocity, Bilateralism, and Economic Hostages: Self-Enforcing Agreements in International Trade", 30 Int. Stud. Quart. 7(1986) 참조.

Ⅱ. 世界貿易秩序의 再編

앞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世界貿易秩序의 변화에는 GATT를 기준으로 하여 두가지 커다란 조류가 존재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의거하여 우선 세계교역질서의 근본규범으로서의 “GATT체제 및 기본원칙”을 분석하고, GATT규범자체의 변화로서의 “교역대상범위의 확대”, GATT규범의 예외적인 적용 또는 GATT규범에 反하는 현상으로서의 “保護貿易主義의 대두” 및 GATT체제와 무관하나⁶⁾ 世界貿易질서의 한부분으로서 새로이 부상되고 있는 “환경보호”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GATT의 基本原則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전개

(1) GATT의 설립

전후 世界貿易의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설립 이래 40여년이 경과되면서 정회원국 103개국, 잠정회원국 1개국, 준회원국 28개국(1991년 10월 현재)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GATT는 國際貿易關係를 규율하는 국제조약으로서의 기능 및 다자간 무역확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통상교섭의 기능을 수행하여 國際貿易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으나⁷⁾ 과연 GATT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제기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⁸⁾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명확한 법적기초에 근거한 국제문제의 해결 및 조정에 적극적·능동적 역할을 완수하

6) GATT의 “환경과 무역에 관한 작업반”에서 국제환경협약과 GATT무역규범과의 관계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GATT는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고 있어 실제 진전은 저조한 실정이다.

7) Fred O. Boadu and E. Wesley F. Peterson, “Multilateral Agreements and Visions of the World”, 71 Neb. L. Rev. 460(1992) 참조.

8) 이재욱, 서진교, 임정빈, UR이후 농산물무역정책의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pp. 4-12.

는 기관”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GATT에는 이러한 역할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국, 기구운영방식 및 재원조달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GATT가 이와 같이 공식적인 국제기구로서 성립되어 있지 못한 가장 커다란 이유중의 하나는 전후 世界貿易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미국의 비협조에 기인하고 있다.⁹⁾ 당초 1947년 GATT의 설립당시 GATT는 國際貿易機構(ITO)의 성립을 전제로 한 예비조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GATT초안이 제출된 직후 미국의회는 미국 행정부의 GATT협상권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등 미국의 GATT참여에 반대하여 國際貿易機構의 창설은 무산되었다.¹⁰⁾ 그 이후, 미국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GATT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GATT는 독립적인 국제기관으로서 발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世界貿易秩序에서의 미국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2) GATT의 기본원칙

GATT조문은 前文과 총 4부 38조의 本文 그리고 附屬書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GATT의 설립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문의 제1부는 최혜국대우 및 관세인하규정(제1조 및 제2조), 제2부는 교역질서관련규정(제3조 내지 제23조), 제3부는 관세인하교섭과 GATT의 가입 및 탈퇴(제24조 내지 제35조), 제4부는 개도국의 무역 및 개발에 대한 선진국의 특혜규정(제35조 내지 제38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에는 각국별 양허세율표와 GATT조문에 대한 해설서가 내포되어 있다. 동 GATT조문은 이러한 복잡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多者間主義”(Multilateralism) 및 “自由貿易主義”(Free Trade)의 두가지 일반원칙에 기본원리를 두고 있다.¹¹⁾ “多者間主義”원칙은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9) 한국무역협회, GATT해설서(1988), pp.30-31.

10) Dieboid, William, Jr., "The End of the ITO",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Princeton, N.J.:International Finance Section, Princeton University, 1952), p.16 참조.

11) Comment, "Most-Favored-Nation Treatment and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 Quiet Revolution", 6 Int'l Trade L. J.221(1981).

MFN)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바 동원칙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는 유리한 대우는 여타의 국가에도 차별없이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自由貿易主義” 원칙은 國際貿易에 있어 시장경제의 원리를 최대한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허용된 형태이외의 수출입제한조치를 금지하는 원칙으로서, 관세등만을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한편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제11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GATT의 기본원칙인 “多者間主義”와 “自由貿易主義”는 최근 “兩者間主義” 및 “地域主義”에 의하여 변질되고 있다.

(3) GATT협상의 진행

GATT협상은 제1차협상이 1947. 4 ~ 10월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이래 1986.9에 개시한 우루과이라운드까지 총 8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금번 우루과이라운드의 기본목표는 (i) 국제교역에서의 시장개방확대, (ii) GATT 체제 및 규율강화, (iii) 新分野에 대한 다자간교역규범을 마련하여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새로운 세계교역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¹²⁾ 이 GATT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1991.12.30 제시된 Dunkel 최종협정안을 기초로 시장 접근분야, 서비스분야, 법제화분야, 협정의 조정분야의 四元方式에 의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미국, EC 등 주요국간의 이해상충으로 1993.5 현재까지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동 협상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GATT협상과는 달리 新分野인 서비스,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Rights), 무역관련투자(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등이 새로운 협상분야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산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등의 보호를 위한 다자간 국제규범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이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번 GATT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전후 國際貿易機構(ITO)와 유사한 다자간무역기구(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MTO)의 설립이 EC, 캐나다에 의하여 제안되어 설립협정

12) The Honorable David K. Karmes, “International Trade at a Crossroads: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in the Post Uruguay Round Era”, 71 Neb. L. Rev. 438(1992).

안, 발효일등이 논의되었으나, 미국이 MTO설립협정안에 문제점이 다수 내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MTO협정대신 우루과이라운드 의정서 채택을 주장하여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역시 國際貿易에 있어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시사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2. 貿易範圍의 擴大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대상은 당초 15개의 그룹¹³⁾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1991년 4월 7개¹⁴⁾의 그룹으로 통합조정되었다. 동 그룹은 과거의 GATT협상과는 달리 新分野인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조치등이 협상대상에 포함되었는 바¹⁵⁾ 이 중 우리나라의 무역정책과 연관된 중요부분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시장개방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전에는 서비스에 관한 교역은 선진국과 후진국간 또는 선진국간의 양자간 협상으로 논의되었고 GATT협상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으나 서비스교역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동분야의 교역이 선진국 특히 미국이 비교우위를 占하고 있는 분야이어서 다자간 협상으로는 최초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의제로 상정되었다. 서비스시장개방은 교역이 가능한 모든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 운송, 통신등 전형적인 서비스분야뿐 아니라, 회계, 법률, 사무, 세무, 엔지니어링, 설계, 광고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까지도 다양하게 포함되는 포괄적인 협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 협정은 모든 서비스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협정(Framework), 각 개별 서비스를 규율하고 있

13) 관세, 비관세, 열대산품, 천연자원, 섬유, 농산물, GATT조문, MTA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무역관련투자, 분쟁해결, GATT기능강화, 지적소유권, 서비스.

14) 시장접근, 섬유, 농산물, 규범제정 및 투자, 제도분야, 지적소유권, 서비스.

15) 재무부,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우리의 대응(내부보고서) 참조.

(France Work)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등 선진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i) GATT이외의 다자간 규범제정, (ii) 위조상품 문제를 무역관련지적재산권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것 등을 주장하여 지적재산권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나,¹⁷⁾ 개도국은 (i) 기존 GATT규범의 적용 (ii) 위조상품문제와 무역관련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의 분리검토 (iii)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논의는 GATT가 아닌 다른 국제기구의 관할임 등을 내세워 지적재산권보호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¹⁸⁾

그 동안 협상경과는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측면, 위조상품의 교역방지 및 WIPO등 기존 국제기구등과의 관계등이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保護貿易主義의 強化

1980년대 초반 이후 주요선진국에서는 산업구조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한 幼稚産業뿐 아니라 斜陽産業까지도 보호무역을 통해 보호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는 바 그 배경으로서는 (i) 1970년대 이래 국가간 국제수지의 불균형 심화등 세계경제의 악화 (ii) GATT체제의 비효율성 (iii) 신민족주의의 대두등을 들 수 있다.

保護貿易主義는 GATT체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自由貿易主義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세계교역을 희생시키는 부정적인 무역관행이다.¹⁹⁾ GATT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통한 제한이 아니라 數量규제, 가격규제, 정부간여, 수출자율규제협정, 행정절차등 각종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이 사용되고 있는 바²⁰⁾ 1947년 GATT의 창설이후

17) Leafler, "Protecting Unites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Abroad: Toward a New Multilateralism," 76 Iowa L. Rev. 277(1991).

18) Abbot, "Protecting First World Asset in the Third World: Intellectual Property Negotiations in the GATT Multilateral Framework," 22 Vand. J. Transnat'l L. (1989) 참조.

19) 1991 U.S. Trade Policy Agenda and 1990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S.(U.S.G.P.O., 1991) p.2 참조.

20) Clarida, R.H., "That Trade Deficit, Portectionism and Policy Coordiantion," 12 World Economy(Dec. 1989).

8차에 걸친 GATT의 관세인하 및 양허협상의 결과로 관세의 무역장벽으로서의 성격은 크게 감소한 반면, 앞서 말한 보호주의의 대두로 인하여 비관세장벽이 점차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ATT상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조치가 남용·위반되고 있음은 물론 GATT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각종 비관세조치들도 수입규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GATT협정상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GATT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관세수입제한 조치로서는 (i) 외환사정 및 국제수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취하여지는 수입제한조치(제12조), (ii) 특정한 경우 허용되는 농수산물의 수입제한(제11조제2항 c), (iii) 식량등의 부족사태해소를 위한 수출제한(제11조제2항 a), (iv) 상품분류나 등급에 관한 기존의 적용상 필요한 제한(제11조제2항 b), (v)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규제(제19조), (vi) 相互主義에 입각한 GATT규정내에서의 보복 조치로서의 수입제한조치(제23조제2항), (vii) 의무면제에 입각한 수입제한조치(제25조제5항), (viii) 개도국의 특정산업보호조치(제18조), (ix) 공중도덕·생명보호등을 위한 수입제한조치(제20조) 및 안전보장상의 이유에 의거한 수입제한조치(제21조) 및 (x) 殘存輸入制限(Residual Quantitative Restrictions)이 허용되고 있다. 이 중 殘存輸入制限은 회원국이 GATT가입 이전부터 국내법에 의거 보유하고 있었으나 GATT규정에는 합치하지 아니하는 수입제한을 지칭한다. 이러한 殘存輸入制限은 GATT가입후에는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며, 1960년 GATT총회에서 殘存輸入制限절차가 채택되는 등 동 제한의 경감·철폐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비협조로 완전히 철폐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또하나의 대표적인 보호주의 장벽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단은 소위 灰色措置(Grey Area Measures)로서, 이는 자율수출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VER), 시장 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greement:OMA)등 수입국의 국내시장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조절·제한하는 취지의 협정을 말한다. 이러한 灰色措置는 의견상으로는 GATT에 위배되지 않으나 실제적으로는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수출규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역보복조치를 취한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GATT상 금지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4. 世界經濟의 블록화

地域主義라 함은 이해를 같이 하는 수 개의 국가군 사이에서만 자유무역, 최혜국대우를 국지적으로 적용하는 무역형태를 말하며, 모든 국가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多者間主義, 自由貿易主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²¹⁾ 따라서 地域主義는 GATT 제12조의 최혜국대우원칙에는 위배되나, 현행 GATT규정 제24조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自由貿易協定과 관세동맹등 地域主義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地域主義는 1970년대 이후 EC의 형성을 계기로 심화되었는 바,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國際貿易의 역학관계의 변화상 세계경제구조에서 미국·EC등이 차지하는 영향력 및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하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의 경제이익을 보호하고자 地域主義 성향이 보편화되었다. 둘째, GATT내에서의 다자간협상방식에 대한 회의 및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해대립등으로 GATT가 자국의 이익도모에 커다란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개별국가간의 양자간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²²⁾

이와 같은 地域主義는 현재 유럽지역, 아메리카지역, 아시아지역등을 중심으로 3분화 되고 있다.²³⁾ 유럽지역에서는 EC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블록체로서 내부적인 정치통합작업과 아울러 EC교역량의 60%이상을 점하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하고 있으며, 향후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동구권과의 교류도 확대할 전망으로 있어 유럽전체가 단일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²⁴⁾ 한편, 아메리카지역에서의 북미자유무역지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는 규

21) 최세균, 권오복, 세계농산물교역질서변화와 한국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8) p.9; Richard S. Belons & Rebecca S. Hartley, The Growth of Regional Trading Blocks in the Global Economy(1990) p.1.

22) GATT체제와 지역주의(자유무역지대)의 비교고찰에 관해서는 Jeffery J. Scott, "More Free Trade Areas?", in Free Trade Area and U.S. Trade Policy(Jeffery J. Scott ed., 1989) 참조.

23) 아프리카지역에서도 51개국의 국가로 조직된 아프리카연합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의 주도하에 아프리카경제연합(African Economic Community)의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28 Afr. Res. Bill(Political Series)6, 10154(1991) 참조.

24) 민충기, EC경제통합과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정책연구90-02(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참조.

모상 세계최대의 경제블록체로서 북남미 전체를 통합하는 美州聯合體 (Enterprise for the American Initiative)형성의 전초적 단계로서 결성되고 있다.²⁵⁾ 미국은 1991년 6월 남미 11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남미공동시장 (Southern Common Market)과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1991년 7월에는 카리브해연안의 13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카리브공동시장(Caribbean Common Market)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기타 11개 남미국가들과 개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美州聯合體결성을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ASEAN)이 결성되어 있는 바, 이는 경제협력체라기 보다는 일종의 정치, 외교적협력체로서 유럽 및 아메리카지역에 비하여 地域主義가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최근 EC의 경제통합, 북미지역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자극을 받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동아시아경제그룹 (East Asian Economic Grouping: EAEG) 등의 형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 중 APEC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ASEAN 6개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하여 무역, 투자, 인력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EAEG는 일본에 의해 주도되는 그룹으로서 ASEAN 6개국, 타이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부르네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타이완, 홍콩, 한국, 일본 등이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미국과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국가간의 정치적·경제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어 광범위한 地域主義의 출현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²⁶⁾ 이러한 地域主義는 GATT규정상의 예외조치에 해당되므로 명목상 GATT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세계전역에 걸친 地域主義의 확산은 GATT의 기본원칙인 多者間主義 및 自由貿易主義의

25) 미주연합체(EAI)는 1990.6.27 미대통령에 의하여 발표되었으며(Exec. Order No. 12,757, Fed. Reg. 12,107(1991), 자세한 내용은 William H. Cavitt, Western Hemisphere Free Trade Initiatives, 18 William Mitchell L. R. 271,277(1992) 참조.

26) Bergsten C. Fred and William R. Clime, The U.S.-Japan Economic Problem: Policy Analysis in International Economics(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7) p. 13.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世界貿易秩序에 커다란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다.²⁷⁾

5. 環境保護 및 野生動植物保護의 대두

(1) 環境보호에 따른 교역제한

현재 環境관련 국제협약은 150여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은 (i) 오존층보호를 위하여 프레온가스, 할론등의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 (ii) 유해폐기물의 수출입과 최종처리방법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iii)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 및 (iv) 생물과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네가지 협약이다.²⁸⁾

이러한 협약들은 대기보호, 폐기물관리등 環境문제를 규제의 1차적 대상으로 하여왔으나 최근 국제환경문제는 상품의 교역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2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무역·환경위원회 공동작업반”이 설치되어 1993년 6월 OECD 각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GATT에서도 추진실적은 저조하나 “GATT/환경과 무역에 관한 작업반”에서 국제환경협약과 GATT의 무역규범과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중이다. 한편 1992년 6월에 Rio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CED)²⁹⁾에서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되었는 바 “환경이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는 개발”(environmentally saf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칙을 강조하여 環境보호여부를 교역문제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은 전문과 27개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 중 환경과 무역을 連繼시키고 있는 주요조항으로서는 (i) 환경을 이유로 한 差別的이고 不當한 무역규제의 排除(제10조), (ii) 환경 또는 보전에 유해한 물질의 移動規制(제14조), (iii) 環境보호비용의 상품 원가비용에의 반영(제16조) 및 (iv) 隣接國家間의 公해유발비용분담(제

27) What Bilateral Deals Mean for Trade, Economist, (February 6,1988) p.63.

28) 하동만, 국제환경협상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신국제경제질서, 신유균편저) pp.1121-1144 참조.

29) United Nations Confer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at Rio de Janeiro.

19조)등을 들 수 있다. UNCED에서 채택된 사항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원칙적·선언적 성격이나 향후 법적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발전될 전망이며, 환경보호문제가 점차 국제적인 중요성을 확보해 감에 따라, 앞으로 환경문제와 교역문제의 連繼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2) 野生動植物保護에 따른 교역제한

野生動植物保護에 대한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국제협약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워싱턴조약을 들 수 있다.³⁰⁾ 워싱턴조약은 UN환경계획사무국 주관하에 1973.3.3. 워싱턴에서 성립하고 1975.7.1. 발효된 조약으로서³¹⁾ 멸종우려가 있는 野生動植物의 수출입규제를 통한 국제협력의 증대로 野生動植物의 국제적 보호를 도모할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워싱턴조약은 보호대상동식물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바, (i) 제1종은 현재 멸종우려가 매우 큰 동식물로서 학술적 목적이외에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엄격히 금지되고, (ii) 제2종은 현재 멸종우려는 없으나, 국제거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앞으로 멸종우려가 있는 동식물이며 (iii) 제3종은 체약국이 자국내의 특정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체약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동식물이다. 제2종과 제3종의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허용되나 반드시 수출국의 관리당국이 발급하는 수출허가서를 필요로 한다. 締約國이 아직 워싱턴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교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未締約國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문서를 조약상의 허가서로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중 동 협약에의 가입을 현재는 상공부와 조약상 관리당국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 있어 상공자원부가 발급하는 수출허가서를 조약상의 허가서로 갈음처리하고 있다.

Ⅲ. 對外貿易法の 改正方向

GATT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은 (i) 自由貿易主義 및 多者間主義의 확

30) 김철수, 야생동식물에 관한 국제협약과 무역규제(신국제경제질서, 신유균편저) pp.1157-1177 참조.

31)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산을 통한 세계경제 block화 현상의 확산저지, (ii) 비관세장벽철폐, 교역상대국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출시장다변화 및 확대, (iii)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 및 국제경쟁력확대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i) 우리나라의 관세·비관세 장벽완화 및 시장개방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산업피해우려 (ii) 각종지원 및 보조금정책의 제약으로 국내산업재편성 및 구조조정에 부담을 주는 등의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³²⁾ 對外貿易法の 改正方向은 이러한 GATT 우루과이라운드를 중심으로 한 세계교역질서의 재편과정 및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주요교역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 및 의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체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상기 관점에서 세계교역과 우리나라의 역할, 貿易秩序規定과 貿易去來規定의 개선, 교역대상범위의 정비,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등에 관한 對外貿易法の 改正方向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世界貿易秩序와 우리나라의 역할

世界貿易의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世界貿易上 주도적 지위에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영향력이 강대할 때는 自由貿易主義, 영향력이 약화될 때는 保護貿易主義를 취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세기초 영국을 비롯한 식민지보유국가들의 무역 및 내국경제가 쇠퇴하자 保護貿易主義를 채택하여 세계 1차, 2차대전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으며, 전후 세계교역의 중심세력으로서 自由貿易主義를 선도하던 미국은 1970년대 중반이후 무역적자·재정적자의 확대등 자국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자국 경제보호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공정무역을 명분으로 하여 保護貿易主義를 강화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GATT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하여 과거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世界貿易의 주요체계 및 질서가 강대국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GATT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통하여 자국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EC·일본 및 개발도상국등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은 현재 세계교역질서가 특정국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47년에 설립된 GATT가 현재까

32) 상공부 내부자료(국제협력관실, 1992.12) 참조.

지 국제법상 국제기구로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일개 회원국인 미국의 의회의 반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 현재 GATT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의제로서 기존 무역의 범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서비스, 투자 및 지적소유권등은 모두 미국이 다른 교역국에 비하여 相對的 優位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서 미국의 주도하에 우루과이라운드의 의제로서 채택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세계교역에 있어서 特定國의 영향력은 아직도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찰하여 볼 때 對外貿易法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10대 교역국으로서의 국제법상 책임과 의무의 수행은 물론 과거의 수동적·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권리 및 이익을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對外貿易法의 명칭이 재고되어야 될 것이다.³³⁾ 현행 “對外貿易法”이란 명칭은 “貿易”의 개념하에 “對外”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 “대외”라는 개념이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점은 동법 제1조에서 “대외무역”을 “(이하 “무역”이라 한다)”고 하여 사실상 “대외무역”과 “무역”사이에는 법률상 어떠한 상이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외”라는 수식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³⁴⁾ 다음은 “무역법”이라는 용어의 적정성 또한 검토되어야 될 것이다. 현행 對外貿易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역”을 “물품의 수출·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결과 교역대상의 범위가 물품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서비스, 지적소유권, 무역관련투자등의 분야가 새로운 무역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對外貿易法의 내용도 “물품의 수출·수입” 뿐 아니라 “수출입질서”에 관한 규정도 내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무역법”보다는 “통상법”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對外貿易法 제1조 및 제6조의2 등에서 “통상”이라는 용어가 “무역”이라는 용어와 병렬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제6조에서는 “무역”의 개념정의만 되어있고 “통상”의 개념정의는 되어있지 않아 향후 法改正을 통하여 “통상”의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될 것이다.³⁵⁾

둘째, 國際貿易秩序에 있어 세계 10대교역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위에 부합

33) 1957.12. 공포된 최초의 무역관련법의 명칭은 “무역법”이다.

34) 대외무역법을 영문표기로서 “Foreign Trade Act”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원제목에 충실히 번역하면 “Foreign Foreign Trade Act”가 될 것이다.

35) 기존의 “무역법”이라는 용어에 더욱 중점을 두는 이유는 상공자원부 상역국 무역정책과가 “대외무

되는 권리주장과 의무의 수행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對外貿易法은 과거 우리나라가 國際貿易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미약하고 경제가 규모는 작으면서도 수출에 크게 의존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이 國際貿易秩序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던 1950 - 60년대에 법의 주요골격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世界貿易秩序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보다는 주어진 무역질서를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그 기본적인 비중을 두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선 “국민경제의 발전”에 對外貿易法の의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는 對外貿易法 제1조는 그 목적에 “국제경제의 발전”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이 국내적 측면은 물론 국제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世界貿易秩序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동법 제4조제4호에서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등의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만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特別措置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등을 위한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도 동 特別措置를 할 수 있도록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우리나라가 가입·체결한 무역관련 국제협약의 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이들 무역관련국제협약과 對外貿易法과의 기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무역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창설, 가입, 협상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체결된 국제협약에 대하여는 이에 따른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취지의 선언적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현재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무역관련국제협약의 체결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동 무역관련협약이 헌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제협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의 설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체결·가입한 국제협약에 대하여는 해당 당사자간의 편의를 위하여 동 국제협약의 국내법화의 여부를 불문하고 對外貿易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또는 동법관리규정에 공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역법”의 주무부서이므로 통상진흥국의 통상업무와 구별하려는 의도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貿易秩序制度와 貿易去來制度의 改善 및 體系化

현행 對外貿易法은 반덤핑·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구제, 불공정무역제제, 지적소유권보호제도등 “貿易秩序規定”과 수출입의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는 “貿易去來規定”의 두 부분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貿易秩序規定”은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과 더불어 대폭 보완·확충되어야 하는 반면 “貿易去來規定”은 수출과 수입의 균형적 확대를 위하여 대폭 간소화·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1) 貿易秩序規定의 改正

현행 對外貿易法상의 “貿易秩序規定”은 무역에 관한 제한등 特別措置(제4조),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제32조 내지 제43조), 수출입의 질서유지(제44조 내지 제48조)등을 들 수 있으나, 동 규정들은 對外貿易法 도처에 산재하여 있고 또한 주요 내용도 GATT규정 또는 세계주요교역국가의 貿易秩序規定들의 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대폭적인 개선·보완을 요하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不公正貿易行爲規制에 대한 개선이다. 현행 對外貿易法 제4조제2호 및 제3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不當·差別的인 부담제한을 가할 때 수출입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44조는 우리나라 무역업자의 외국에 대한 불공정한 수출·수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³⁶⁾ 對外貿易法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조치는 미국통상법 제301조를 모델로 한 것으로서 GATT협정에 유사한 조항이 존재되거나 논의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미국의 슈퍼301조에 대하여 EC·일본등이 GATT협정에 위배됨을 이유로 提訴 또는 보복조치³⁷⁾의

36) 제4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법규제도, 관행등에 대한 규제입에 반하여 제44조는 무역업자등 “사인”의 불공정한 무역이 규제대상임으로 사실상 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37) 일본정부는 미국통상법 제301조에 대하여 “보복관세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일본 정부에 의하면 이는 상대국의 GATT에 위배되는 조치로 일본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 운용상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인 바,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제재대상 및 조치내용등에 관한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될 것이다. 동법 제4조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2호 및 제3호와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의 규정이므로, 이들을 동일한 조항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법체제상 문제가 있으므로 분리규정하도록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 제44조는 우리나라 무역업자등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반대상인 규범이 “국내의 법령” 및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국한되어 GATT협정을 비롯한 “국제법규 또는 국제협정등의 위반”이 누락되어 있는 바, 이를 동법 제44조에 포함되도록 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제44조는 불공정무역의 類型으로서 “지적소유권의 침해”(동조 제1호) 및 원산지 허위표시(동조 제2호)등을 예시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동조 제3호), 예시된 類型이 너무 제한적이므로 차라리 예시된 類型을 삭제하여 일반규정으로 남겨놓거나 다양한 類型을 예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둘째,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에 관한 개선이다.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의 운영은 전적으로 關稅法の의 적용을 받았으나 1992.12.8 改正에 의하여 관세법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의 접수,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산업피해의 조사 및 판정 등의 절차는 상공부 무역위원회의 기능으로 이전되었다(對外貿易法 제40조제6호). 그러나, 절차전반은 아직도 關稅法에 규정되어 있는 바,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가 關稅法에 규정되는 것은 법체계상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나 최소한 동제도의 기본골격은 對外貿易法에 규정되어야 하며,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에 있어서의 국내산업피해조사절차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에 있어서의 국내산업피해조사절차와의 異同을 비교하여 제도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GATT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반덤핑제도에 대하여 (i) 原價이하의 판매가격을 통상거래로 인정하고 (경기불황시의 原價이하판매는 불인정) (ii) 정상가격과 수출가격비교시 加重 評均에 의한 가격을 비교하며 (iii) 構成價格의 이윤산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반

상대국 수입품에 보복관세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미통상법 제301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1993. 5. 26) 참조.

덤핑제도규범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i) 부품의 수입 국내조립을 통한 迂廻덤핑의 규제, (ii) 부품의 제3국에서의 조립을 통한 迂廻덤핑의 방지등 새로운 형태의 반덤핑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반덤핑제도 절차부분의 강화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의 관련규정의 改正을 검토하여야 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반덤핑제도의 類型에 대해서는 對外貿易法에 반덤핑행위의 類型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改正되어야 될 것이다. 또한 GATT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상계관세제도에 대하여 (i) 보조금을 금지보조금, 상계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의 세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ii)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R & D보조금과 지역개발보조금만 인정하고 (iii) 보조금의 迂廻방지 규정의 도입을 협정 초안으로 마련하고 있다. 본 협정초안이 최종안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 및 개발보조금이 허용보조금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무역지원정책수행이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금지급의 근거규정이 되고 있는 對外貿易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GATT협정에 부합되도록 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긴급수입규제제도의 개선이다. 현행 對外貿易法상의 “貿易秩序規定” 중 가장 체계있게 정비되어 있는 규정이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 제도이다.³⁸⁾ 그러나 GATT 우루과이라운드에서 (i)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무차별적 용원칙을 기준으로 하되 다자간 감시하에 예외적인 경우 특정국에 대한 쿼타감축을 허용하고 (ii)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 최초 3년간은 보상·보복을 면제하기로 협정초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改正하여야 될 것이다. 다만, 선진국등이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서 GATT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출자율규제 등 灰色措置(Grey Area)등에 대하여는 3 - 4년 내 철폐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8년까지 시한을 연장하도록 합의된 바 있으므로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하여 무역업자에게 수출입에 관한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對外貿易法 제48조는 이를 삭제하든지 또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改正되어야 될 것이다. 한편 對外貿易法 제32조제3호는 우리나라산업에 피해를 주는 물품의 類型으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 GATT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集積回路配置設計” 및 “營業

38)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규제제도(상공부 무역위원회, 1993.1) 참조.

秘密” 등 새로운 개념의 지적재산권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도록 동법이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지적재산권을 위법하게 사용한 물품의 수출입에 대한 규제조항의 개선이다. 현행 對外貿易法상 지적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규정으로서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를 들 수 있으나, 제44조는 지적재산권의 類型으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및 프로그램저작권”만을 나열하고 있어 최근 GATT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논의되고 있는 “集積回路配置設計”, “營業秘密” 등 새로운 개념의 지적재산권이 배제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이 지적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내포할 수 있도록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법 제44조는 우리나라 무역업자등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한 외국의 무역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규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동법 제32조제3호에서 지적재산권의 수입증가로 인한 우리나라 산업의 피해존재시 구제조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適法하게 수입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위법한 지적재산권의 규제와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달리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美國通商法 제337조와 같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조치조항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2) 貿易去來規定의 簡素化

현행 對外貿易法의 대부분의 규정은 수출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貿易去來規定”으로 되어 있다. “貿易秩序規定”과는 반대로 “貿易去來規定”은 대폭 간소화되어 우리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무역의 去來費用을 낮추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선진무역거래제도를 갖추어야 될 것이다.³⁹⁾

첫째, 무역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對外貿易法은 무역업을 甲類貿易業 및 乙類貿易業으로 분류하고, 甲類貿易業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또는 최근 1개월간 매일 예금

39) 상공자원부의 내부보고서(1993.3) 참조.

간고가 5천만원이상인 개인에게만 등록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 7조), 乙類貿易業의 경우는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을 열거하여 무역업을 허용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8조). 甲類貿易業의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乙類貿易業의 경우는 GATT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맞추어 농업, 서비스업, 지적재산권관련업등 무역업허용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乙類貿易業者들 대부분이 甲類貿易業의 요건을 사실상 충족시킬 수 있고, 非營利法人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의 수행상 무역업을 허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므로 향후에는 甲類貿易業과 乙類貿易業의 구분을 폐지하고 단일한 “貿易業”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對外貿易法施行令은 무역업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效力確認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동법시행령 제12조), 이러한 效力確認制度 보다는 등록의 갱신제도가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최초의 무역업등록요건만 갖추면 등록갱신을 허용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둘째, 수출입승인절차의 간소화이다. 현행 규정은 수출입마다 매건별로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 25조),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무역업자가 동일한 물품을 계속적으로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수출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입승인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少額輸出入경우에는 승인을 면제하고 추천기관의 수출입추천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입승인으로 같음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수출의 경우에는 “戰略物資” 등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승인제도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역거래형태에 대한 제한의 완화이다. 현행 對外貿易法상의 거래형태는 12개의 특정거래형태만 수출입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동법관리규정), 물물교환등 신규거래형태의 발견시 수출입이 불가능하여 무역거래의 다양화를 저해하는 바, 未分類 수출입형태의 도입 또는 가능한 모든 무역거래형태의 나열등으로 다양화, 혼합화되어가는 무역거래형태를 수용하여야 될 것이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사항이외에도 세부적인 수출입절차가 개선되어야 하는 바, (i) 輸出物品義務檢查制度(수출검사법 제3조)의 폐지 및 수출업자의 자율적 검사제도 도입, (ii) 외화획득원료의 이행기간(對外貿易法施行令 제 45조)의 연장 및 외화획득원료의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對外貿易法施行令

제48조)의 다양화허용, (iii) 수출입추천품목 및 자율수출규제품목의 단계적 폐지(상공자원부 수출입공고) (iv) 輸出入承認事後管理制度(對外貿易法施行令 제38조)의 완화 및 (v) 북방국가와의 수출입 및 투자절차의 간소화(상공자원부고시)등이 필요하다.

3. 貿易範圍의 整備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GATT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무역의 범위를 기존의 상품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무역관련투자”에 까지 확대하고 있는 반면, GATT 우루과이라운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각종 국제협약 및 회의에서는 환경문제, 동식물보호를 이유로 상품의 교역마저도 제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상품의 교역을 무역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對外貿易法상의 “무역”의 개념에 대한 改正검토가 필요하다.

(1) 교역대상범위의 확대

GATT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결과가 무역의 범위에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무역관련투자”를 포함시키게 된다면 국내무역관련법규가 이에 부합되게 改正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무역관련투자”를 규율하고 있는 個別法規에 관련절차를 각기 규정할 것인가 또는 이러한 個別法規에 대하여 一般法的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對外貿易法에 종합적으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각 個別法規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무역관련투자” 각 분야의 무역관련측면뿐 아니라 다른 여타분야와의 유기적 관계도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으나, 무역관련법규가 수개의 법규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무역관련 법질서를 확립할 수 없으며 무역업자등 이해관계당사자에게도 무역체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상기분야를 對外貿易法에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단점을 제거할 수 있으나, 각 분야의 소관부처가 고유업무를 타부처에 이관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반대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무역관련투자” 분야의 무역과 관련된 부분의 기본적인 체계는 對外貿易法에 규정하여 貿易秩序規定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를 확립하고 細

部事項은 각 個別法規에 규정하는 한편 對外貿易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 세부사항을 다시 반영하는 절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경우 對外貿易法 제6조제1호의 “무역”의 정의는 단순히 “물품의 수출·수입”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서비스” 및 “무역관련투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조제3호 및 제4호의 “수출” 및 “수입”의 개념도 이와 관련하여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기본적인 법체계를 설정할 경우 각 분야별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재산권분야는 GATT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상표, 의장, 특허등의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集積回路配置設計, 營業秘密등의 새로운 지적소유권등에 관한 무역질서규범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對外貿易法 제32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集積回路配置設計, 營業秘密등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의 추가가 필요하며 (i)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 및 權利燒盡의 인정 (ii) 컴퓨터프로그램중 저작된 프로그램만 보호 (ii) 반도체칩을 탑재한 최종제품을 보호대상에 포함, (iii) 영상저작물의 허가금지권 인정 (iv) 보호의 遡及效를 원칙적으로 인정등이 GATT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의 반영이 필요하다.⁴⁰⁾

둘째, 서비스분야는 서비스에 관한 국제교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자간원칙 및 규범을 설정하며 “서비스일반협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은 시정각, 금융, 통신, 해운, 건설, 유통, 운송, 관광등 다양하다. 對外貿易法 제32조는 流通서비스의 국내산업피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신설하여야 하고 향후 GATT우루과이라운드의 서비스분야협상결과에 따라 (i) 서비스시설의 확충 및 체계화, (ii) 국내경쟁체제의 구축 (iii) 서비스산업근대화를 위한 환경조성등 추가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⁴¹⁾

셋째, 무역관련투자분야는 GATT우루과이라운드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무역흐름을 제한 또는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의 철폐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다.⁴²⁾ 현행 對外貿易法은 이에 대한 관련규정은 물론 유사

40)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책(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1.12) 참조.

41) 김기홍, 신현수, UR서비스협상과 도·소매업시장개방(산업연구원 1991.4) 참조.

42) Kwan,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in the Uruguay Round: Toward a GATT for Investment?”, 16 N.C.J. Int’L. & Com. Reg. 309(1991).

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경우 관련조항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협정초안에 의하면 (i) GATT규정의 內國民待遇(제3조), 수량제한금지규정(제11조)에 위배되는 신규무역관련 투자조치가 규율대상이 되나 (ii) 多國籍企業의 제한적 사업관행은 제외되며 (iii) 위반조치의 현상동결 및 점진적 철폐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사항의 법제화가 필요하단 할 것이다.

(2) 환경보호 및 野生動植物의 보호

각종 국제환경협약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 및 野生動植物의 보호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이는 환경보호비용 및 野生動植物 보호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시키게 되어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⁴³⁾ 즉, 환경보호와 野生動植物保護 정책에 협조한 기업(국가)의 상품이 그러하지 아니한 기업(국가)의 상품보다 오히려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i) 환경보호 또는 野生動植物保護비용을 생산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품의 수입시 동 비용만큼의 관세(Green Duty)를 부과하는 방안, (ii) 동 상품의 수입시 일정한 환경기준요건의 충족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iii) 환경보호 또는 野生動植物保護費用을 요하는 상품의 수출시 동 비용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및 셋째의 방안은 현재의 GATT의 최혜국대우규정 및 보조금금지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국은 각국은 두번째의 방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⁴⁴⁾ 현재는 환경보호 및 野生動植物保護의 문제가 기존 GATT체제와는 별개의 문제로 발전논의 되고 있으나, 향후 GATT체제를 수정하여 환경문제를 GATT체제내에 編入시키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고, 또한 기존 GATT체제하에서도 환경보호 및 동식물보호는 점차 國際貿易의 일반원칙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협약에의 가입이외에 동 문제

43) 자세한 내용은 노대래, 국제환경논의의 경제적영향분석(신국제경제질서, 신유균편저) pp. 1147-1156 참조.

44) 예컨대, 미국에서는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에 따라 1995년부터 자동차배출기준 및 연료사용기준을 수입요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며, 네덜란드에서는 음료수의 수입시 용기회수의무등을 부과하고 있다.

에 관련된 국내법의 制·改正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自由貿易協定締結의 검토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블록화현상은 GATT 多者間主義의 非效率性이라는 명목하에 세계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地域主義의 장·단점을 GATT협정과 연관하여 분석하여 보고⁴⁵⁾ 우리나라의 自由貿易協定가입가능성 및 법적대응책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1) 地域主義와 GATT협정

GATT협정과 관련하여 地域主義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⁴⁶⁾ 첫째, GATT 다자간협정은 회원국의 경제에 민감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즉 철강, 자동차, 조선 및 섬유등에 관한 협상에 비효율적이다. 둘째, GATT협정은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유지협정(OMA), 보조금의 지급 및 기타 무역왜곡관행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현행 GATT규정은 규정위반시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비효율적인 바 이는 분쟁해결절차의 미비는 물론 규범으로서의 GATT협정 자체에 기인하고 있다. 넷째, 自由貿易協定은 상기 GATT협정의 단점을 보완하여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i) 회원국간의 交易創造 및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세계교역증대 및 세계교역의 자유화에 이바지 할 수 있고, (ii)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회원국간의 통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GATT협상난항을 타결하고 GATT규범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iii) 회원국의 加入擴大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세계교역자유화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地域主義를 반대하는 입장

45) Murray G. Smith, "What is at Stake?", in *Bilateralism, Multilateralism, and Canada in U.S. Trade Policy* 69, 97(W.Diebold ed., 1988); Robert E. Hudec, "The FTA Provisions on Dispute Settlement: The Lessons of the GATT Experience," in *Understanding the Free Trade Area Agreement*(D. McRae & D. Stegen ed., 1988) p.31.

46) John P. Byrley, *Regional Arrangements, The GATT and the Quest for the Free Trade*, 6 *Florid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23(1992).

은 다음과 같다.⁴⁷⁾ 첫째, 地域主義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창출하지는 아니하더라도 地域主義에 가입하지 아니한 非加入國에 대해 차별적이며, 이는 GATT의 무차별주의에 위배된다. 둘째, 地域主義의 가입국은 GATT 다자간협상에서 個人國家라기 보다는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서 참여하므로 非加入國으로 하여금 이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地域主義의 창출을 조장하게 되어 GATT 多者間主義에 위배된다. 셋째, 地域主義는 保護貿易主義나 비관세장벽의 설정과 비교하여 볼때 무역을 조장할지 모르나, 이는 소위 경제학상의 “次善理論”(Second-Best Theory)으로서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

(2) 우리나라와 地域主義

우리나라의 地域主義 가입가능성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되어 왔으며⁴⁸⁾ 일본 주도하의 동아시아 경제그룹, 미국 주도하의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및 한·미自由貿易協定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어 왔고 이중 동아시아 경제그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는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韓美自由貿易協定의 측면만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⁴⁹⁾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은 (i) 무역의 주요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주의를 피하여 확고한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ii) 미국상품을 수입함으로써 輸入先 多邊化에 기여할 수 있고 (iii)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될 경우 실업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iv) 나아가 양국간의 국방·안보협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自由貿易協定은 (i)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다변화전략에 역행하고 (ii) 우리나라 무역의 미국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며, (iii) 농산물, 전자등 첨단제품, 서비스, 지적소유권, 무역관련투자등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의

47) Fred O. Boadu and E.Wesley F. Peterson, Multilateral Agreements and Visions of the World, 71 Neb. L. Rev. 460(1992) 참조.

48) 세계경제의 지역적 통합현상과 한국경제의 진로(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1992.11.) 참조. 최근에는 한·중자유무역협정의 추진도 검토되고 있으며(중앙일보 1993. 5. 26), 제26차 태평양경제협력회의(PBEC)에서는 개방적 지역주의,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및 역내무역자유화의 3대원칙이 우리나라에 의하여 제시된 바 있다(조선일보 1993. 5. 26) 참조.

49) Jeffery J. Schott, "More Free Trade Areas?", in Free Trade Areas and U.S. Trade Policy(Jeffery J. Schott ed., 1988) p.39.

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므로 관련분야 산업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체결에 깊은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만일 동 自由貿易協定이 체결된다면 기존의 교역체제와는 상이한 교역제도가 한미간에 적용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한 바, 그 법제화의 내용 및 폭이 방대하므로 對外貿易法에 각 조항마다 개별적인 예외조치를 규정하기 보다는 特別法の 制定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 주요내용으로서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구제제도, 內國民待遇, 분쟁해결절차등 貿易秩序規定과 상품, 서비스, 통신, 지적소유권, 투자, 농산물등의 시장개방 및 원산지규정, 통관절차등의 貿易去來規定등이 될 것이다.

5. 기타 改正方向

위에서 논의된 사항 이외에도 몇가지 개선사항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사태의 발생시 수출입의 제한에 대한 규정의 정비이다. 현행 對外貿易法 제4조제1호 및 제4호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및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등의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우에 수출입의 제한·금지에 대한 特別措置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特別措置의 발생사유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동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등 기본성격을 달리하는 조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체계상 적절하지 못하므로 긴급사태의 범위를 “국제법·국내법상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등 우리나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긴급한 사태”등으로 규정하고, 독립된 조항으로 분리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둘째, 通商專門人力의 육성에 관한 규정의 정비이다. 현행 對外貿易法 제6조의2제4호는 通商專門人力의 양성을 통상진흥정책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通商專門人力의 양성에는 통상교섭에 필요한 지식 및 애국심의 배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외국어에 능통한 공무원을 주로 통상협상에 참가시켰는 바, 그 주요이유는 주요교역국 특히 미국과 통상교섭에 있어 상대국의 언어로 통상교섭을 수행하여 당연히 상대국의 언어에 능통한 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통상교섭능력이나 애국심보다는 어학능력중심으로 통상인력이 배출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i) 公用語가 사용되는 협상 (ii) 우리나라 언어를 사용하되 통역관을 배석시키는 협상

(iii) 상대국의 언어를 사용하여도 무방한 협상등으로 구분하여 그 기준을 對外貿易法 제6조의2의 下位法令으로써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IV. 結

우리나라의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世界貿易秩序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세계교역국들은 世界貿易의 기본규범인 GATT협상을 통하여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기존 무역질서를 개편하고 무역대상의 범위에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등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自由貿易協定の 체결, 兩者間主義의 확대 등 GATT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무역규범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교역질서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 변화하는 것은 世界貿易秩序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世界貿易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미약하였을 때에는 주어진 무역환경에 소극적으로 적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였으나, 현재는 세계주요교역국으로 부상하였는 바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위에 부합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행함과 동시에 再編되는 세계교역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對外貿易法은 이러한 과정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